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0 - 2호

2020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1차 사업 지원사업 공고

울산지역의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0년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1차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960백만원, 35개사 내외

* (2차 사업 공고) '20.5월 중, 409백만원, 15개사 내외 지원
* 지원금액 및 기간 : 국비 50백만원 한도, 1년 이내(국비보조율은 지원상세내용 참조)

□ **(사업기간)** '20. 2 ~ 사업종료시까지

□ **(주무부처)**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 **(사업대상)**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

□ **(지원분야)**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컨 설 팅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규제대응컨설팅, 재기컨설팅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마 케 팅	마케팅 및 시장조사, 패키지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2. 지원 상세내용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 지원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가능(국비 지원 5천만원 한도)
* 단,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일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제외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한도(천원)
컨설팅 (4개)	일반	기술 컨설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15,000
		경영 컨설팅	인사조직, 재무, 경영체계, 환경경영, 구조개선 등	15,000
		규제대응컨설팅	근로시간단축 및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등	15,000
	재기 컨설팅		* 별도 트랙으로 지원	-
기술 지원 (6개)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금형 및 시제품 제작	30,000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공정개선 기획 및 기술개발, 정보화 구축 등	20,00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등	15,000
	규격 인증		규격인증 시험·심사 및 인증 대행컨설팅 등	15,000
	제품 시험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	10,000
	설계		제품개발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	10,000
마케팅 (4개)	마케팅 및 시장조사		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분석	10,000
	패키지디자인 개선		시장진출 및 확대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지원	15,000
	브랜드 지원		브랜드 네이밍 및 BI·CI 개발 지원	20,000
	홍보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20,000

< 재기컨설팅 : 별도트랙 >

진로제시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10,000
Pre-회생	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	30,000
회생컨설팅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30,000

□ **(보조율)**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90~5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 재기컨설팅 중 회생컨설팅, Pre-회생은 신청기업 자산기준으로 보조율 차등

자산 구간	회생컨설팅		Pre-회생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0억원 이하	89%	11%	-	-
30억원 초과~50억원 미만	75~90%	10~25%	90%	10%
50억원 이상~80억원 미만	72~90%	10~28%	90%	10%
8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62~90%	10~38%	85~90%	10~15%
12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52~77%	23~48%	72~90%	10~28%
2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43~63%	37~57%	59~88%	12~41%
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37~54%	46~63%	51~76%	24~49%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33~49%	51~67%	46~68%	32~54%

* 단, 진로제시컨설팅은 평균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50~90%)

3. 지원 요건

□ **신청 자격**

○ 울산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 (소규모 규모기준) 3년(2016~2018) 평균 매출액 120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중점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서면심사 시 우대

* 중점지원대상 : ①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관련 전후방 산업
② DATA · N/W · AI 등 ICT산업 융합 제조업

□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 가능은 지원가능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 및 공급자로 선정된 기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또는 타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 · 중복이 확인된 기업(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포함)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7(월)~2.28(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수시접수 : 재기컨설팅(Pre-회생, 회생컨설팅, 진로제시 컨설팅)

5. 평가절차

□ **평가절차 : 서면심사 → 진단 · 평가 →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사업신청서 서류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 · 평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진단 및 현장평가

○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에서 진단보고서 및 평가점수를 근거로 하여 지원기업 최종선정 및 바우처 발급금액 산정

* 재기컨설팅은 별도 평가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 상정

6.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 · 접수	평가 · 선정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지방중기청·중진공 홈페이지	중진공 홈페이지	서류 및 현장평가·진단	선정기업·운영기관 (기업부담금 납부)	기업지원금 (자부담포함)	사업 진행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방청·중진공	중진공·운영기관·선정기업	중진공	서비스기관-선정기업

□ 추진일정

구 분	1차 사업	2차 사업	비 고
모집공고	**'20. 2.10**	'20. 5	
신청·접수	**'20.2.17~2.28 17:00**	'20. 5	
평가·선정	**'20.3~'20.4**	'20.6~'20.7	
협약 체결	**'20.4~'20.5**	'20.7~'20.8	
사업 추진	**'20.5 ~**	'20.9 ~	

* 상기 일정은 사업 일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차 사업은 별도 공고 예정

7.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일반컨설팅, 기술 및 마케팅 지원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52-210-004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052-703-1162(접수문의 등)

□ 재기컨설팅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재창업센터 052-703-1139

별첨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5. 산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신청서 [참여기업용]

기업현황	기업명		대표자				
	지 역		법인등록번호				
	설립일자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이메일		대표자 휴대전화				
	대표자 성별		SMS 수신동의		☐ 동의 / ☐ 미동의		
	업 종		생산품목	10차 산업분류			
	(본사)전화번호		(본사)팩스번호				
	(공장)전화번호		(공장)팩스번호				
	구 분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 사						
	공 장						
	지점(1)						
	지점(2)						
	담당자/직위		연 락 처				
	휴대전화		이 메 일				
	최근 3개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정치)	2020년 ( )월현재	2020년 년간
	매출액(백만원)						
	종업원수(명)						
	생산/기술인력(명)						
	마케팅 인력(명)						

지원분야 및 프로그램 **	컨설팅	☐ 기술컨설팅	☐ 경영컨설팅	☐ 규제대응 컨설팅	☐ 재기컨설팅
	재기컨설팅	☐ 진로제시	☐ Pre-회생	☐ 회생컨설팅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 기술개발관련 인프라 구축	☐ 기술이전 및 지재권획득	
		☐ 규격인증	☐ 제품시험	☐ 설계	
	마케팅	☐ 마케팅 및 시장조사	☐ 패키지 디자인개선	☐ 브랜드 지원	☐ 홍보지원
바우처(정부)지원신청 금액(백만원)		총계 :	☐ 컨설팅 :	(재기 :)	
			☐ 기술지원 :	☐ 마케팅 :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법인, 개인), 4. 제조혁신바우처 사업계획서, 5. 신용정보동의서(날인원본), 6.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해당시), 7. 중점지원업종 대상 증빙서류 등 기타 요청서류(해당시)

** 각 분야별 1개 프로그램 선택 가능. 단,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일반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지원에서 제외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중진공, 각 운영기관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금액 등)를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 · 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 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 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 · 공동진단기관,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회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조회의 목적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참여를 위한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투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 ·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연대보증인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회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회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공동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기타 신용정보(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회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연대보증인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 -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등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관련 상담, 참여, 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 · 유지 · 이행 · 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 · 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기업진단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사업의 설정 · 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기업진단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 등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 · 공동진단기관 ·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회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제공·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기업 진단관련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창투회사,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등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채무 전액상환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기업진단, 공동진단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연대보증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 · 공동진단기관 ·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회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용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 · 공동진단기관 ·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회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기업진단·공동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용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기타 신용정보(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사업의 설정 · 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 · 공동진단기관 ·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회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연대보증인 등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기업진단 공동진단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계획서 [참여기업용]

□ 회사연혁

년 월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대표자 경력

		졸업연월	학교	학과(전공,계열)	졸업	수료	중퇴
대표자	학력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처	근무처 업종	최종직위(담당업무)		
동업종종사기간		년 개월	포상 및 상훈				

□ 주요 거래처

구분		업 체 명 (연락처 tel)	거래품목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비중 (%)	연간 거래액 (백만원)	거래기간	대금회수 기간
매출처	국내						개월	
							개월	
							개월	
	해외						개월	
							개월	

□ 주주상황

(20 년 월 일 현재)

주주명	경영실권자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주주명	경영실권자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 주요 생산제품 및 기술

제품용도 및 특성 (생산품 설명)	
제품생산 공정도	*주제품에 대해 기재*
시 장 상 황 (시장규모,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 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 기술개발환경(기술개발 조직현황, 설비 보유 여부 등) 함께 작성 *품질관리에 대한 현황 기술(품질관리 조직현황, 시스템 등)*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현황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현황 작성(증빙서류 제출필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을 전부 포함, 인증은 국가 또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 승인하여 발행한 인증서기준(ex. KS, KC, CE 등)*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분야 및 지원 필요성

구 분			내 용
지원분야	컨설팅	일반	*(지원프로그램 작성 및 해결 필요한 애로사항 등 상세 설명)*
		재기	
	기술지원		
	마케팅		
추진배경 및 목적			
기업 문제점			
기대효과			

□ 세부실행 계획

신청분야		프로그램	소요비용 (정부지원 + 기업부담)	비 고
컨설팅	일반		백만원	
	재기		백만원	
기술지원			백만원	
마케팅			백만원	

□ 추진일정

신청분야		세부추진 내용	'20년										'21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컨설팅	일반															
	재기															
기술지원																
마케팅																

* 각 프로그램 별 지원한도 초과분은 참여기업 부담

□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및 과제참여 현황

과제명	주관부처	참여과제명	참여년월

□ 바우처 사업 기업 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휴대전화	
최종학력 및 전공	*예시)대졸, 경영학*	생년월일		이메일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 사업비 조성내역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100%	총 사업비 50~90%	총 사업비 10~50%

※ 보조금 지원비율 : 매출액 3억원 이하(90%), 3억원~10억원(80%), 10억원~50억원(70%), 50억원~120억원(50%)
단, 재기컨설팅 Pre-회생·회생컨설팅은 별도 기준 적용

□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품목코드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 가능